#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위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159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위상・우재준・최수진

김선교 • 조경태 • 임이자

박상웅 · 김기웅 · 김형동

정동만 • 박충권 • 김대식

의원(12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토양오염을 '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·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'로 정의하고 있어, 자연적 기원에 의한 토양오염은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. 그런데 최근 산성 강우 등 자연적 기원에 따른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토양오염의 정의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토양오염의 정의에 '지질학적·지형학적·기후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은 것으로서 사람의 활동 등에 의하여 노출된 경우'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토양오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조제1호).

법률 제 호

##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"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"를 "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"로 하고,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가. 지질학적·지형학적·기후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은 것으로서 사람 의 활동 등에 의하여 노출된 경우
- 나.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해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은 것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		
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			
다.			
1. "토양오염"이란 <u>사업활동이</u>	1 <u>다음 각</u>		
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	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		
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			
<u>서</u> 사람의 건강·재산이나 환	<u>.</u>		
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			
한다.			
<u>&lt;신 설&gt;</u>	<u>가. 지질학적·지형학적·기</u>		
	후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		
	되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		
	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		
	을 넘은 것으로서 사람의		
	활동 등에 의하여 노출된		
	<u>경우</u>		
<u>&lt;신 설&gt;</u>	나.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		
	람의 활동에 의해 토양의 오		
	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은 것		
2. ~ 7. (생 략)	2. ~ 7. (현행과 같음)		